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58
----------	------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1일
발의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3. 8. 2.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자 15명)하여 2023. 8. 21.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69호)과
2023. 8. 3. 이원형 의원이 발의(찬성자 16명)하여 2023. 8. 21.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971호)을 심사한 결과,
이들 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의안번호 제969호 제정안과 제971호 제정안은 최근 기온이 급등하는 추세에서 매년 폭염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이들 제정안은 모두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며 구성내용 역시 큰

들에서 대동소이하여 공통된 내용 및 각 제정안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병합하여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시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무더위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바.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사.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마.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시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무더위쉼터, 살수시설, 차양막 등 폭염 회피·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더위쉼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